

문서확인번호 1167-4732-3862-6900

발행번호 제2-214-2023-8623호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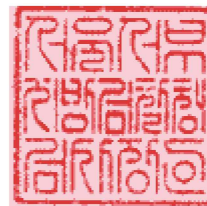
(전화번호 130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사건

2023.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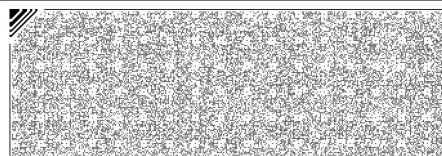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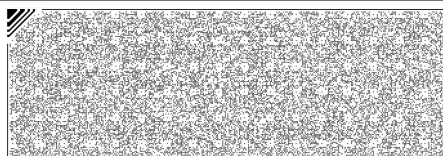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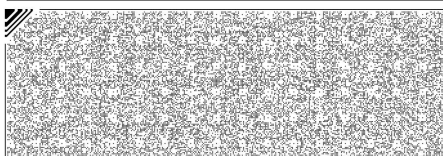
수 신 임찬용 귀하 발 신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22형제24027호
② 고 소 인 성 명	임찬용
피 고 의 자 소 인	③ 성 명 문경석
	④ 주민등록번호 00000000
⑤ 죄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검 사	유정현
⑦ 처 분 년 월 일	2023. 1. 18.
⑧ 처 분 요 지	불기소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 참조
⑩ 비 고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서확인번호 1167-4732-3862-6900

[별 지]

[죄 명]

[죄 명]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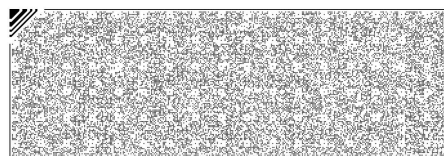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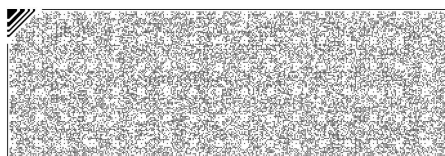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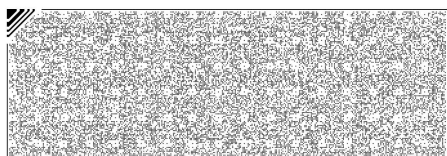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직무유기

[처분요지]

가, 나, 다, 라-각하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서확인번호 1167-4732-3862-6900

발행번호 제2-214-2023-8623호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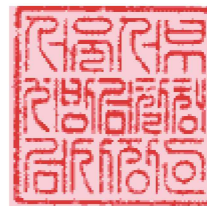
(전화번호 130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사건

2023. 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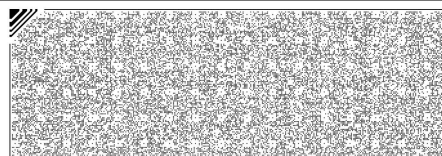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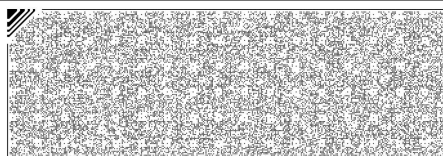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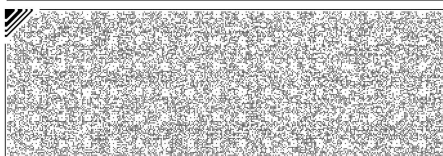
수 신 임찬용 귀하 발 신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제 목 불기소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22형제24027호
② 고 소 인 성 명	임찬용
피 고 의 자 소 인	③ 성 명 이승민
	④ 주민등록번호 000000-0*****
⑤ 죄 명	별지 참조
⑥ 처 분 검 사	유정현
⑦ 처 분 년 월 일	2023. 1. 18.
⑧ 처 분 요 지	불기소 (별지 참조)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 참조
⑩ 비 고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서확인번호 1167-4732-3862-6900

[별 지]

[죄 명]

[죄 명]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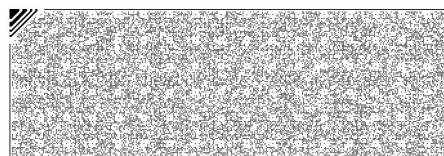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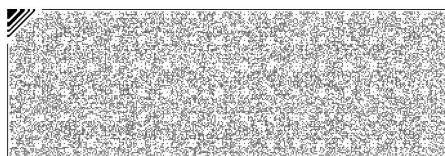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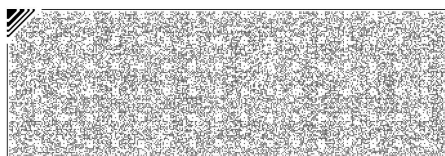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직무유기

[처분요지]

가, 나, 다, 라-각하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3. 01. 18.

사 건 번 호 2022년 형제24027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유정현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 피 의 자

1. 가, 나, 다, 라 문경석
2. 가, 나, 다, 라 이승민

II . 죄 명

-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나. 허위공문서작성
-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라. 직무유기

III .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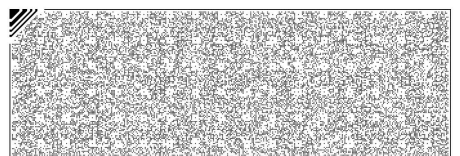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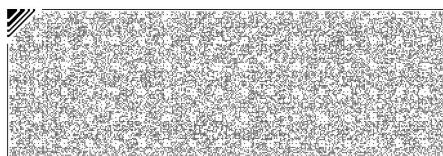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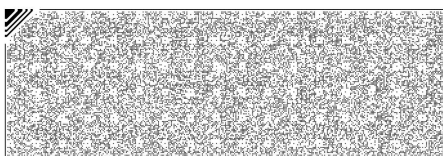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IV . 피 의 자 사 실 과 불 기 소 이 유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결과보고서(기록 2권 396쪽) 기재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무유기

○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결과보고서(기록 2권 396쪽)기재와 같다.

○ 이에 덧붙여, 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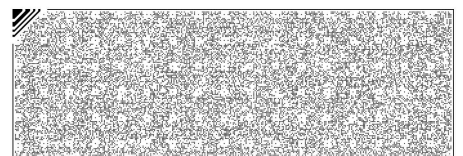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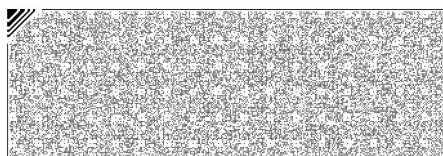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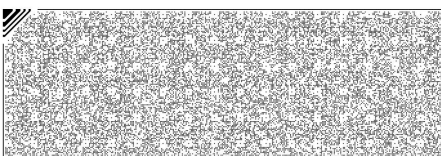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 인바,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소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고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86모12 결정 참고) 피의자들의 행위로 고소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허위 내용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고소인 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수사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허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의자들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③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 적인 포기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범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 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 기 어려운바(대법원 2010도13694호 판결 참고), 피의자들이 사건을 수사한 후 처분을 한 이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각하한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67-4732-3862-69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 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